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승인안

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: 2019. 6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2018년도 평창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,941,261천원으로서, 이중 10건에 2,341,956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<u>계(10건)</u>	2,341,956천원
○ 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	85,331천원
○ 5.16~5.18 호우피해에 따른 응급복구비	1,333,406천원
○사과화상병 발생에 따른 방제약품비	21,670천원
○사과화상병 발생에 따른 수목 제거비	12,390천원
○폭염장기화에 따른 폭염대책 지원	230,625천원
○가뭄장기화에 따른 관수시설 지원	253,000천원
○가뭄장기화에 따른 관수시설 지원(도비매칭분)	60,000천원
○평창운수(주) 노조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	9,450천원
○ 중증장애인 소득보전을 위한 연금예산 부족분	168,000천원
○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	168,084천원 임.

2018년도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2,000천원으로서, 이중 1건에 100,000천원을 지출결정 하였으며 내역은

계(1건)

100,000천원

방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결과 반영 및 민간위탁용역 변동비 증가분 보전

100,000천원 임.

3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.

□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8조(예비비 사용의 제한)

○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